

2021. 06. 이후 졸업 대상자 변경 사항

1. 2021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74~75 page

- 4) **기타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** ※ 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의2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의2
① '21.6.23. 이후* 자격검정 대상자는 「유아교육법」 제22조의2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미해당 여부를 확인한다.
* 무시험검정 신청일 기준이 아닌 자격 검정일 기준으로 적용

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(유아교육법 제22조의 2 항)

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(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.

1.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2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3. 성인에 대한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- ⑦ '21.6.23. 이후 교원자격검정이 이루어지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함
⑧ 교원자격증 기존 미발급자 발급 신청 및 부전공 표시과목 추가의 경우는 미해당
⑨ 대학은 검정 대상자에게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고, 다음 사항*을 참고해 학칙 등에 결격사유 확인 내용을 반영한다. * 추가 안내 예정
⑩ (성범죄이력 관련) '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또는 대학소재지역 경찰서에 공문 발송을 통한 확인' 할 수 있으며, 세부 절차는 대학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.(미발급자의 발급 신청의 경우는 신청자가 경찰서, 범죄이력회보서 발급시스템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 직접 첨부)
⑪ (중독여부 관련) '무시험검정 신청자가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'(일괄 검진 가능)하며, 대학은 확인 후 명단을 원본과 함께 보관하도록 한다.

2. 2021. 06. 23. 이후 졸업 대상자 추가 확인사항

가. 성범죄 경력 조회

: 대학소재지역 경찰서에 공문 발송을 통한 일괄 확인
*성범죄 경력 조회를 위한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작성 후 제출

나. 마약 등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진단

: 학생 본인이 검사 후 의사 진단서 제출
*중독여부 진단 관련해서 정확한 지침이 나오지 않아 추후에 추가로 공지 예정